

#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996. 2. 28

기획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6년 2월 16일

○ 회부일자 : 1996년 2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1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96. 2. 28)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공업경제국장 김 승 기)

가. 제안이유

- 정부의 지방중소기업육성시책에 따라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육성자금의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기업이 확대되어 이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구조조정, 경영안정지원에서 입지지원, 중소기업구조개선, 특별지원지역, 종합지원센터 지원까지 포함하여 자금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자금지원 대상기업에 있어서는

제조업에서 창업투자회사, 공장용지임대사업자,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자, 시장재개발사업자, 연쇄회사업 직·가맹점, 상점가진흥조합, 상업협동조합 조합원까지 포함하여 확대하며

셋째,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운전자금분야,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분야,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분야의 해당업체에 융자해 주던 것을

중소기업시설개체(구조조정)지원자금, 중소기업입지지원자금, 중소기업구조개선지원자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지원자금,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으로 세분화 확대하였으며

넷째, 융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는

규칙으로 정하였던 것을 본 조례에 명문화 시키고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업담당국장이 되도록 하였음.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충북지방중소기업 사무소장
2.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 본부장
3.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충북지회장
4. 산업기술정보원 충북지역정보센터 소장
5. 상공회의소 회장 1인
6. 기타 도지사가 위촉하는자로 하였음.

다섯째, 기금관리공무원에 있어서는

기금운용관을 사업담당과장에서 사업담당국장으로 상향조정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을 신설하여 사업담당과장으로 기금을 관리토록 하는등

자금지원 범위와 자금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하여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균형 개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 개정 조례안 제5조 기금의 관리, 운용

제6조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보면 충북지역에는 행당되지 않는 기금과 대상사업이 포함되는데 충북의 실정을 전혀 반영치 않은 통상산업부의 지침안대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실효성이 의문시됨.

답 변 :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는데 우리도의 예산이 풍족하여 100% 조달한다고 하면 우리도의 실정에 맞게 지원대상사업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기에 지원할 수 있겠으나 자금이 따라서 60%까지 중앙자금이 지원되고 현재에는 사업이 없지만 주변 여건의 변화로 사업시행이 요구될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이기도 함. (공업경제국장 김 승 기)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석 6명, 찬성 6명)

7. 소수의견 요자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붙임 서류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